

## 계룡시공인조례승인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계룡시 공인(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)의 규격·등록·관수방법·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공인의 종류 및 비치·사용)**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,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.

②시장, 소속행정기관의 장,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.

③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공인을 따로 비치·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④의결기관·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.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.

⑤시장, 소속 행정기관의 장,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·사용할 수 있으며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표시하여야 한다.

⑥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·사용할 수 있다.

⑧시장, 소속행정기관장, 그 기관의 보조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⑨시장,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무인전자민원증명 발급용 전자공인을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공인을 각인할 때에는 전자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⑩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 사

용할 수 있으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때에는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3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)**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·경리관·재산관리관·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·채무관리관·지출원·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.

**제4조 (공인의 글씨 및 규격)** ① 공인(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)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.

**제5조 (각인)**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. 다만,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, 일상경비출납원,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,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 한다.

**제6조 (공인의 등록·재등록)** ① 공인의 등록·재등록시는 시에 있어서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등록한다.

②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.

**제7조 (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)** ① 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등록(재등록을 포함한다)신청하여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컴퓨터 화일로 총무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기획감사실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총무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.

**제8조 (공인대장)** 총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·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인영의 보존)**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공고)** 공인을 등록·각인하거나 개인,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 전자공인은 제외한다.

**제11조 (공인의 폐기)** ① 공인의 교부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.

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(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폐기사유를 기재)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 (공인의 사고보고)**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 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공인의 관수자)** 공인의 관수자는 시에 있어서는 총무과장이,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가 면에 있어서는 총무담당주사가,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. 다만,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 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.

**제14조 (관수방법)**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15조 (공인의 날인)**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.

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. 다만, 등·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.

**제16조 (시행규칙)** 공인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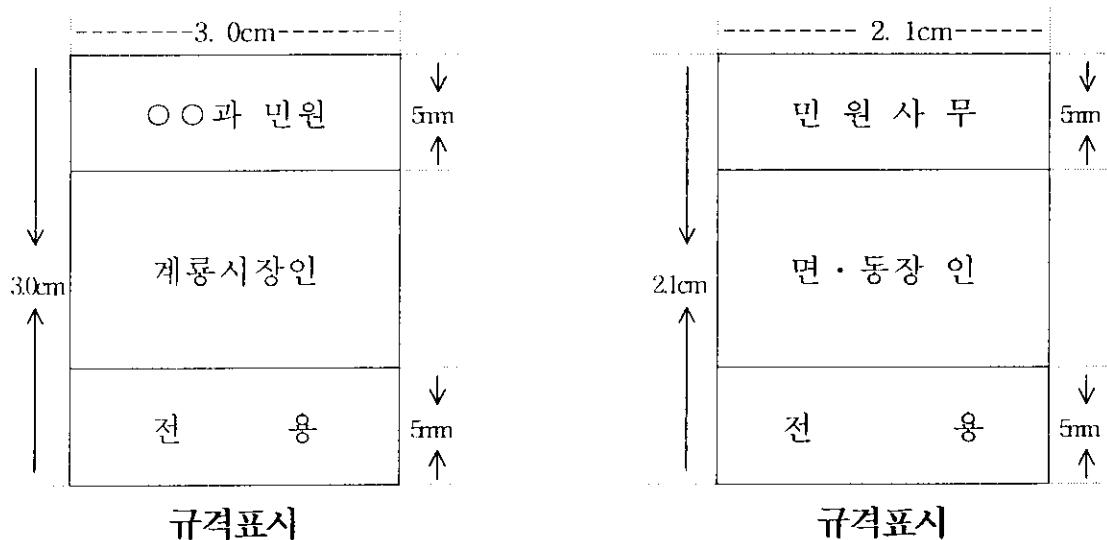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공 인 의 규 격

공 인 의 구 分		규 격
청 인	합 의 제 기 관	3.6cm 정방형
직 인	1. 시장의 공인	3.0cm 정방형
	2. 소속행정기관의 장 가. 4급 또는 5급공무원인 소속행정기관장	2.1cm 정방형
	나. 6급 또는 7급공무원인 보조기관장	1.8cm 정방형
	3.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 공인	1.6cm 정방형
특 수 공 인	4.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. 징수관, 경리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지출원 및 분임자	2.0cm 정방형
	나. 출납원 및 분임자	1.8cm 정방형

[별표 2]



[별지 제1호서식]

## 공인대장

공인명			
종류		<input type="checkbox"/> 청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인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공인	관리부서
등록·재등록공인	(인)영		등록일 년 월 일
	새긴날		년 월 일
	새긴사람		주소: 성명: 주민등록번호:
	최초사용일		년 월 일
	재료		
	등록사유		
	도(시)보 공고		년 월 일 (제 호)
비고			
폐기공인	(인)영		등록일 년 월 일
	폐기일 (분실일)		
	폐기사유		<input type="checkbox"/> 마멸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)
	폐기방법	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각 <input type="checkbox"/> 이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)
	폐기자		소속: 직급: 성명:
	도(시)보 공고		년 월 일 (제 호)
	비고		

\*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### 전자공인등록대장

공인명							
종류		<input type="checkbox"/> 청인	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인	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인	
등록·재등록	전자공인인영	등록일(재등록일) :		년	월	일	
		최초사용일 :		년	월	일	
	전자공인	등록(재등록)	사	유			
	등록당시의 일반공인	관리부서					
인영	비고						
폐기	전자공인 인영	등록일(재등록일) :		년	월	일	
		폐기일 :		년	월	일	
		폐기사유					
		폐기자	소속:	직급:	성명:		
	비고						

비고 : 전자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,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## 공인의 등록(재등록)신청서

기 관 명

(전화번호)

문서번호 :

시행일자 :

수 신 : 발 신 : 인

참 조 :

- 제 목
- 공인등록(재등록) 신청
  - 공인폐기신고

공인명					
종 류		<input type="checkbox"/> 청 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직 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공인	
등록(재 등록, 폐 기) 사 유					
폐기	폐기예정일 (분 실 일)	년 월 일			
	폐기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소 각	<input type="checkbox"/> 이 관	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( )	
공인 처리	폐기자	소 속 :			
		직 급 :			
		성 명 :			
비 고					

신문용지54g/m<sup>2</sup> 210×297mm

## 인 영 부

인 년 월 일 공인명	년	년	년	년	년
	2월1일 현재				
년 월 일 등록(재등록)	년 월 일 등록(재등록)	년 월 일 등록(재등록)	년 월 일 등록(재등록)	년 월 일 등록(재등록)	년 월 일 등록(재등록)
년 월 일 등록(재등록)	년 월 일 등록(재등록)	년 월 일 등록(재등록)	년 월 일 등록(재등록)	년 월 일 등록(재등록)	년 월 일 등록(재등록)

[별지 제5호서식]

공인사고보고서

수신 : 총무과장

년 월 일

보고자

(인)

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.

1. 사고공인명	
2. 사고발생일시장소	
3. 사고내용	
4. 사고후의 처리전말	
5. 기타	